

2024년 덕진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농업 및 복지 대상 관리,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사각지대 해소를 군민 행복 실현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덕진면
- 감사기간 : 2024. 6. 11. ~ 2024. 6. 14.(4일간)
- 대상기간 : 2022. 9. 20. ~ 2024. 6. 10.
- 감사자 : 기획감사과장 외 6인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지적사항 총괄

총건수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명)		비고
	시정	주의	합계	추징	회수	감액	훈계	주의	
16	6	10	2,212,790	803,320	1,409,470	-	-	-	

II 주요 지적사항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1	일상경비출납원 사무 인계인수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로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출납사무원의 인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일직(재택)근무일 초과근무 부적정(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그리고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직근무자 및 재택근무자가 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확인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지급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체휴무는 일(日)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고, 대체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가 가능하나, 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4	법인카드 회계처리 및 관리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나, 결제일을 넘겨 입금조치 하는 등 카드이용내역 및 지출여부 등의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5	세출예산 집행절차(집행품의 행위) 부적정(주의)	<p>「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을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나, 의사결정(품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 후에 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6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p>「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장의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7	취득세(건축물) 신고·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시정)	<p>「영암군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총 〇건 〇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8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시정)	<p>「영암군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담당자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〇〇〇〇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제출하여 총 〇건 〇원을 누락하여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9	개장신고 업무 소홀(주의)	<p>「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개장신고 증명서 교부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개장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10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 소홀(주의)	<p>「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받아 폐기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반환통보서를 장애인(보호자)에게 송달하여 부당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11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주의)	<p>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시달하여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계획 수립 시기를 지연하였으며 조사기간을 연중,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내용 누락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전반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p>
12	2024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농지위원회 심의 소홀(주의)	<p>「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대장 등에 따라 각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발급하여야 하며, 제9조2항1호~5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p>
13	준공검사자, 공사감독자 지정 소홀(주의)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계가 접수되면 공사감독자 지정·승인, 준공계가 접수되면 준공검사자를 공문으로 지정·승인하여야 하나, 2022~2024년 총 78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공검사 ○건, 공사감독자 변경 ○건에 대해 지정·승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14	건설공사 지출정산 관리 소홀(주의)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2022~2024년 총 78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은 준공일 이전 날짜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건은 5일을 경과하여 대가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p>

연번	제 목	주요위반사항
15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시정)	<p>「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설치공사를 시행 및 준공하면서 정산불가항목을 사용·청구한 부분에 대해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
16	건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시정)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나, ○○○○○○ 정비공사 외 ○건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에 불일치함이 있음에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하여 총 ○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p>